##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09 발의연월일: 2020. 8. 5.

발 의 자: 박대수·김용판·지성호

김성교 · 서범수 · 임이자

윤창현 · 강기윤 · 김태호

김형동 · 김성원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판명되는 경우 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공기전파성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당사자 개인이 확진자와 동선을 대조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수 있는 기관에 보건복지부를 추가하여 명시함으로써, 공기전파성 질병의 업무상재해 입증을 원활히 하여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제31조제1항).

법률 제 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국세청·지방자치단체"를 "보건복지부·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단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u>국</u>	<u>보</u>
<u>세청·지방자치단체</u> 등 관계 행	건복지부·국세청 및 지방자치
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되	단체
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	
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